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조직의 효율화로 민선5기 새로운 군정 방침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서개편 : 1실 12과 ⇒ 1실 12과(변경 없음)

○ 신 설(+2) : 지역경제과, 도시행정과

○ 폐 지(△2) : 허가과, 재난관리과

○ 명칭변경(3)

- 문화체육정보과 → 문화체육과
- 친환경농정과 → 농 정 과
- 건설과 → 건설안전과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 민선5기를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비전실천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정목표를 원활히 추진할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군은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의 기준 14개 실·과·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군수는 제5조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적 조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주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조직 기능강화와 정주여건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능 강화로 허가과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와 도시행정과를 신설하며, 유사·중복기능의 정비와 기구의 효율적 조정으로 문화 체육과, 농정과, 건설안전과로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을 추진코자합니다.

○ 이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대통령령의 범위와 기준하에 추진되는 조직운영의 사항으로 성주군수의 재량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과의 폐지로 민원인들의 허가 등 민원처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1명에 대한 정원의 총수 1명 증가 조치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 기여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539명 → 540명(증1)

○ 집행기관 : 527명 → 528명(증1)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기능직·고용직 : 17%이내 → 16%이내

○ 별정직 : 3%이내 → 4%이내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비율	3%이내	**4.2%이내**	9%이내	**14%이내**	16%이내	**18%이내**	32%이내	**32%이내**	40%이상	**31.8%이상**

○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비율	3%이내	**0% 이내**	64%이내	**78%이내**	27%이내	**22%이상**	3%이내	**0% 이내**	3%이상	**0% 이상**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관련되는 낙동강 수계상 안동, 상주, 구미, 칠곡군 등의 기술직 직원 1명이 경북도에 장기 파견근무됨에 따른 해당 군의행정손실을 막고,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인 기술직 1명을 증원코자합니다.
- 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대통령 령 제4조 총액인건비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며
-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17%이내를 16% 이내로, 별정직공무원을 3% 이내를 4% 이내로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효율성을 두고자 함으로 적절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도로 방식의 새주소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11년까지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2112년부터는 새주소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변경 : **지번주소 → 새주소**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6조

5. 검토의견

○ 주요내용은

- 성주군청 및 읍면소재지의 주소가 조례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2009.4.2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성주군청의 소재지를 지번주소 '경산리 283-1번지'를 도로명 주소 '성주로 3200'으로 하며, 각 읍면 소재지를 각 도로명 새주소에 따라 설정하고자 합니다.
- 이는 기초자치단체 소재지 조례의 조문상 자구수정 차원으로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